

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8]

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(제43조제1항제4호 관련)

1.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: 100,000원
2. 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수수료: 20,000원